1 2013.1.28 제218章 Weekly

이슈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포커스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금융보험 해설

금융상품의 이해(15): 신용연계채권(CLN)

글로벌 이슈

유럽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축소 아베노믹스와 엔화가치

금융시장 주요지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문장,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부회장,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 유주선 교수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함.
 -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함.
 - 한편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 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함.
 -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는 보험정보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 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에 보험정보 유통·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 토론자 대부분은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생·손보협회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 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일원화와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 또한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집중기관 일원화 시 정보 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기관의 지배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1. 정책세미나 추진배경



-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의 집중·활용이 불가피한 반면, 보험정보는 질병정보, 법규위반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함.
-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 법에 근거하여 보험정보를 집중·활용하는 기관은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기관이 일관된 원칙 없이 중복하여 집중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음.
 - 분산 관리 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가 번거로워져 이의 효과적인 행사가 곤란하고 중복 집중은 물론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있음.
- 따라서 현행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를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보험정보 집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주제발표 내용과 함께 정책세미나 토론 내용을 정리하였음.
 -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함.

2.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 내용



가. 보험정보 집중 활용 현황

- 1) 보험정보 개요
- **!!!** 보험정보는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등으로 분류 가능함.

- 계약정보는 다수계약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보험사기 방지에 활용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계약 체결안내·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 용도로 활용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번호, 계약일,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가입금 액.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계약정보에 해당함.
- 사고정보는 계약인수 심사 시 기왕증 등 고지의무 위반 확인, 유사보험금 지급 이력 확인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동일사고에 대한 다수보험 청구 시 허위청구 방지 등에 활용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고일,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장해급수, 병원명 등이 사고정보에 해당함.

!!! 보험정보는 집중주기에 따라 활용가치 및 용도에 차이가 있음.

● 요율산출 목적으로는 연·분기·월 단위 정보도 활용가능하나, 계약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 시의성 있는 정보 활용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일(日)단위 집중 필요

■ 보험정보 집중기관은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에 계약. 사고 정보를 실시간 화면조회 방식으로 제공

- 보험회사는 정보접근권한 제한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 다만, 개인별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과 할인할증률은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회사에 파일형태로 제공

2) 기관별 보험정보 집중 현황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

●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모두 일단위로 집중하고 있으며, 정보종류 및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보유함(KLICS, 2007년 8월 구축).

!!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

- 상해, 질병 등 인보험, 실손보험 등 일부종목의 계약정보만을 일(日)단위로 집중하고 자동차보험의 사고정보를 월(月)단위로 집중함(2008년 7월 시스템 구축).
 - 자동차보험 시고정보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제출하기 위해 집중할 뿐 보험회사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는 연(年)단위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는 월(月)단위로 집 중하여 순보험요육산출에 활용
- 생·손보 사고정보는 일(日)단위로 별도 집중하여 보험사기방지시스템(2001년 6월, 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에 활용
- 또한 공제정보시스템을 구축, 공제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계약·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공제 기관 간 공유(2012년 4월 오픈)

구분	현황		HHT기
	계약정보	보험사고정보	- 법적근거
생명보험협회	생명(日)실손(생보)	생명(日)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
손해보험협회	• 상해, 질병 등 일부 종목(日)	• 자동차(교통공단 등 제공	* 업권 간 협약으로 집중범위를 정하여

• 생명, 손해, 자동차(요율

• 생명, 손해, 자동차(보험

산출목적, 年/月)

사기 방지 목적)

목적. 月)

(표 1) 보험정보 집중현황 및 법적 근거

나. 보험정보 집중 관련 현행 법규

실손(손보)

年/月)

• 실손(공제)

• 생명, 손해, 자동차

(요율산출 목적,

1)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 집중근거: 신용정보법 제25조

● 1998년 7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한 후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 (2002년 9월)을 받아 집중

■ 집중범위: 보험회사 간 협약으로 집중 및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일 업권의 협약에 따라 집중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해야 함.

금융위 승인(2002년 12월) 취득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및 제공이 업무로 명시)

산출기관(법상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

(표 2)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 승인 범위

구분	집중관리 및 활용 대상 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계약일자, 보험상품명, 보험회사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유지여부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수익자,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금 청구일,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보험금 지급사유 		

활용체계: 정보주체의 동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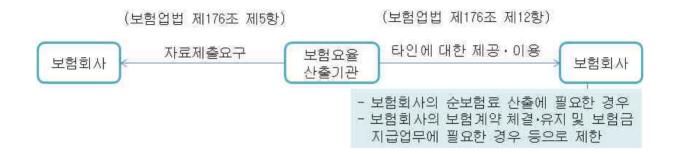
!! 정보보호 체계: 신용정보법에 따름

- 업무상 비밀보호의무. 업무목적 외 타인제공 금지의무
- 신용정보 활용체계 공시. 신용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보안관리대책 수립의무 등

2) 보험개발원

- 집중근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운영함.
- 집중범위: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제176조 제5항)
 - 다만, 요율산출을 위해 필요한 계약정보의 경우 연·월 단위로 요청 가능
 -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법규 위반정보, 질병정보는 보험업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음(제176조 제10항, 제11항).

 활용체계: 보험업법상 정보수집 및 제공에 있어 동의취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나, 신용정보 법과 충돌우려가 있어 실무적으로 동의를 취득하고 있음.



■ 정보보호 체계

- 1995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 보유·변경 시 행안부 협의·공고·개 인정보보호방침 수립의무. 정보 누설 및 부당제공 시 형사처벌 등
 - 1998년 9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아 행안부의 실태점검을 받음.

다. 현행 보험정보 집중활용 체계의 문제점

➡ 첫째.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집중·활용의 법적 리스크

-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을 통해 집중범위·절차와 정보보호장치 등이 단일하게 규율되나, 신용정보와 다른 보험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보집중이 불완전하고 법적 리스크가 지속됨.
 - 구체적으로,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 험자 및 수익자 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 재함.
 - 둘째,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험법 제정으로 논란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셋째, 생보협회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질병·치료정보 등이 금융위원회 승인 범위에 포함되는 지 논란이 될 수 있음.

둘째, 정보 집중범위 제한의 비효율성

- 생·손보·공제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계약인수·보험금 지급 심사 및 보험사기 방지 등에 한계
 - 보험사기의 가장 단순한 경우가 고액 다건의 보험가입 이후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나 보험정보의 집중·활용이 곤란한 경우 가장 기초적인 보험사기 유인조차 차단 곤란
 - 우체국 보험, 공제 등 유사보험도 민영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시장에서의 비중도 크므로 공 제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으면 정보 이용의 사각지대가 존재
- 또한, 실손보상 상품의 경우 모든 보험정보가 집중·활용되어야 중복·초과보험에 대한 사전 안내나 비례보상이 가능
 - 상법은 중복보험에 대해 비례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보장범위 등을 고려한 정산의 어려움으로 관행적으로 비례 보상되고 있지 않음.

₩ 셋째. 다수기관에 분산·중복하여 집중함에 따른 정보정합성 문제 발생

- 정보의 분산 관리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와 통합분석이 어려워지고, 동일정보의 분산 관리 시 정보 정합성 문제도 발생
 -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확인을 위해 3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조회하고 있으나 3개 기관의 시스템 부정합으로 조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 확인
- 다수 기관에 분산·중복하여 집중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도 곤란

라, 해결책 모색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정보 처리·보험체계를 정립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정보를 집중・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보주체가 보험정보원에서 보험정보 집중·제공 현황을 일괄확인하고, 정보정정권, 동의철회권 등을 보장

 신용정보법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처리 요건과 보험회사 간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정보 유통은 건 전하고 공평한 운영을 제약함.

3. 정책세미나 토론 내용



- 토론 발표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문장, 이재용 생보협회 본부장,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 순으로 이루어졌음.
- 먼저,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보험정보 활용체계는 정보 활용과 정보보호의 양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정보권력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협의체에 의한 정보의 집중 및 공공재화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정보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극대회를 위해서는 보험정보 등을 집중해서 이를 보험산업 내 공공재로 활용하되, 정보의 활용목적과 활용목적별 정보 접근 범위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현행과 같은 분산관리체계 하에서는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가 번거롭고, 중복 집중은 물론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다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정보독점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기관은 정보이용자, 정보주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성격을 지니고. 그 역할은 정보 집중과 제공으로 제한되어야 함.
 - 집중기관의 결정 및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과정만을 살펴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정기관의 정보집중업무 담당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움.
- 법무법인 광장 권진홍 변호사는 보험정보와 관련해서 통일된 규율체계가 필요하며, 보험정보 통합 시에는 집중기관의 정보 오남용·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보험정보 관련 규제법에 보다 더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보험정보의 집중·이용·제공과 관련해서는 수집기관과 정보제공 및 이용자, 정보의 처리단계별로 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전문가조차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현재 정보집중기관으로 거론된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산출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보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차후 제정될 보험정보 관련법에서는 정보주체인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조되어야 하며, 정보 활용 범위 및 절차와 권한의 위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 소해보험협회 박종화 상무는 보험정보는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정부에 의한 일방적 정보통합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산업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함.
 - 보험정보 관련법 및 취급기관 변경 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기관만 보험정보 관련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는 등 정책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 현행 신용정보법이 보험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법률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정보통합의 목적이 보험범죄 방지에 국한된 것이라면 금융감독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보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합의 실익이 없음.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보험정보가 질병정보, 법규위반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다는 점과 분산관리에 따른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 의한 집중기관 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개인의 민감정보를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보험개발원 이준섭 부문장은 보험정보의 활용 보다는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하고 법률리스크 해소를 위한 규제일원화가 필요하며, 정보통합에 따른 집중기관의 권력화는 기우라고 주장함.
 - 3개 기관의 보험정보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21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됨.
 - 더불어,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집중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타당하지 않음.
- 생명보험협회 이재용 상무는 생·손보 정보의 이질성, 정보 독점 및 권력화, 정보통합의 효용성 부족, 정 책추진의 투명성 부족 등을 주장하며 보험정보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를 반대함.

- 특히, 정보독점으로 인해 집중기관이 보험회사의 서비스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감독기관적 성격을 띨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 등 정보 실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저하와 집중기 관의 방만 운영을 초래할 것임.
-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효과 또는 정보관리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음.
- 금융감독원 이종환 팀장은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에 대한 논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의 대승적 접근을 촉구함.
 - 현행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과 관련된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집중기관 일원화가 논의된 것임. kiqi